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4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2
2. 부칙(경과조치)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0.

3. 회부연월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Ⅲ. 검토의견

1.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설립하는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u>협회는</u>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u>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u>를 설치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3조(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 —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 추천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의 창업 지원 4.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5.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6. 장애인기업 애로 상담 지원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 (생 략) ②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金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제16조(「민법」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생 략)	7.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또는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과 -----. ⑥ 그 밖에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의 설립과 -----.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협회·진흥원 ----- -----. ③ ----- 협회·진흥원----- -----. 제16조(「민법」의 준용) ① (현행과 같 음) <삭 제>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현행 과 같 음)
---	---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_____ 진흥원이 _____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 _____. 제2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현행과 같음) _____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 _____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¹⁾²⁾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2006년 5월 18일에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여 설립이 허가되었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이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및 대표의 임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³⁾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이 동기관이 공공기관⁴⁾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⁵⁾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개정안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우선, 설립 주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의 창업지원
4.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5.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6. 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7.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08년 1월 25일에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서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부)에 의하여 설립이 허가되었고, 2018년 1월 31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출처: 중소기업부)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16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음.

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13조제1항과 부칙 제2조에 따라 민간 단체인 한국장애인제인협회가 설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부장관이 설립하는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수입의 80% 이상을 국고보조금이 차지⁶⁾하고 있고,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부분이 국고 지원을 통하여 취득⁷⁾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기관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행법령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민법」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은 이 법에 근거한 특수법인⁸⁾임.

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관 운영(수입-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국고보조금	11,617,000(81.2%)	15,193,524(82.5%)	18,908,700(86.6%)
지자체 및 기관 보조금	1,696,600(11.9%)	2,301,872(12.5%)	1,812,400(8.3%)
관리비 수입 등	706,959(4.9%)	684,695(3.7%)	622,503(2.9%)
기부금 수입	219,471(1.5%)	188,790(1.0%)	409,591(1.9%)
자체 수입	72,522(0.5%)	53,554(0.3%)	76,260(0.3%)
합계	14,312,552(100.0%)	18,422,435(100.0%)	21,829,454(100.0%)

주) 괄호 안은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출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7)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지역센터 등)은 총 19건(자산총액 169억 8,155만 7,569원(등기부등본상 자산총액))으로, 이 중 16건은 중소기업부(당시 중소기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3건은 복권기금으로 취득하였음.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되는바,⁹⁾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이라는 공적 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을 받는 점을 반영하여 기관의 설립 근거를 이 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 외 법인의 설립등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임.

2. 부칙(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

8) 특수법인이란,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함(「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1조).

9) 국가적 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법인의 특징으로는 「민법」과 「상법」의 규정만으로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형태, 기능과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국가에 의해서 설립되므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며,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 사무의 수행과 함께 제한된 범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법인의 존속이 국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출처: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p.529)

홍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진홍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이 법에 따른 진홍원이 포괄 승계하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홍원의 명의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홍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홍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진홍원 설립 당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직원은 진홍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홍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현행법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정안에 따른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법인의 명칭, 정관·재산 등 물적 요건, 임직원 등 인적 요건 및 기존 행위의 효력 등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이 공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기관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민간이 재산을 출연¹⁰⁾하여 설립한 재단법

10)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당시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10억 원을 출연하였음.

인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중소기업부장관이 임명하게 되면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당사자 참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의 처

02)6788-5465
